

## 중국 스포츠중재법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영국 중재제도와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Sports Arbitration and  
Suggestions on the Construction of a Sports Arbitration System in China  
- A Comparative Analysis of England Legal System -

김 종 우\*  
Jong-Woo Kim

### 〈목 차〉

- I. 서 론
  - II. 중국 스포츠 중재제도의 현황
  - III. 스포츠중재의 안전수리범위 고찰
  - IV. 중국스포츠중재 절차에 관한 고찰
  - V. 영국 스포츠중재제도로부터의 시사점 및 입법과제
  - VI.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중국 스포츠 중재제도, 안전수리범위, 중국 스포츠 중재 절차, 영국 스포츠 중재  
제도, 입법과제

\* 강남대학교 중국실용지역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 I. 서론

중국의 스포츠중재제도는 중국정부 차원에서 국력향상의 일환으로 스포츠를 장려하고 중국 특유의 소송을 피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중재를 선호함에 따라<sup>1)</sup>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법적 쟁점 또한 존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스포츠중재제도에 대한 현황을 2장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중국 스포츠중재제도가 발전하게 된 연혁을 서술하였으며 중국에서 발전한 스포츠중재제도의 구체적인 유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분쟁유형, 중재 시 적용되는 최소한의 범위, 형사소송제도 및 행정소송제도, 行政復議제도운용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스포츠중재제도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스포츠중재제도의 안전수리범위를 고찰하였는데 서구 주요국가와 중국의 사례 두 가지로 나누어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사례를 간단히 서술하였다. 4장은 중국 스포츠 중재절차에 대하여 고찰을 진행하였다. 우선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와 중재절차를 서술하여 스포츠 중재절차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로 단일중재절차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다원화한 중재절차를 비교고찰하여 중국에 입법과제를 시사하고자 하였다. 5장은 영국 스포츠중재제도의 고찰을 통해 중국 스포츠중재제도의 향후입법 시 개선방안에 시사를 주고자 하였다. 영국의 스포츠중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스포츠중재제도의 입법과제에 일정한 시사를 주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중국 스포츠중재의 제도적 현황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고 향후 법률개정 시 미약하나마 일정한 시사가 되기 바라마지 않는다.

## II. 중국 스포츠 중재제도의 현황

### 1. 발전연혁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경제의 발전을 가져옴과 동시에 중국 스포츠의 상업화 또한 촉진하였다. 현행법률을 보면 오로지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에서만 스포츠중재에 대하

1)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중재연구』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 Yeun, Kee-You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Bodies and Challenges of Legislative Policy for Reestablishment of Sports Arbitration Agency in Korea”, 『중재연구』제23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3. 9.

여 규정을 하고 있다. 동법 제33조는 스포츠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스포츠중재기관이 조정과 중재를 책임진다. 스포츠중재기관의 설립방법과 중재범위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8조 9항은 중재제도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혹은 전인대상무위가 법률을 제정한다고 규정하여 스포츠중재의 입법권이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스포츠중재기관이 설립되지도 않았고 스포츠중재입법 또한 부재상태로 오로지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에 상징적인 규정만이 존재하였다.<sup>2)</sup> 현재 중국의 스포츠분쟁은 자체화해, 스포츠단체 내부에서의 해결, 행정기관의 조정과 재결, 소송 등의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국제적 추세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스포츠 주관부문과 중재기구 및 법원 간의 관할 또한 분명하지 않다. 스포츠단체와 행정기관의 해결방식은 보편적으로 분명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적 효력과 강제력이 부족하다. 중국축구협회의 분쟁해결방식이 단적인 예로 중국 스포츠산업의 내부분쟁해결방식은 권한이양, 심급조정, 인원구성, 증거 청취절차 및 재결효력 등에서 모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중국축구협회는 廣州市 天河구 인민법원에 법원관할권 이의와 관련한 답변서를 송달하였는데<sup>3)</sup> 여기에서 언급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제33조가 규정한 스포츠활동 중에 발생하는 분쟁은 스포츠중재기관이 조정과 중재를 책임진다는 부분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보다 우선적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스포츠중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축구협회가 판단하기에 본 사안은 스포츠중재기관 관할이라는 것이 의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법원에 의해 채택되지도 않았다.

## 2. 주요 분쟁유형 및 관할

### (1) 중국 스포츠의 분쟁유형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존재한다. 첫째, 스포츠선수의 등록, 이적, 경기참가 등 자격문제 때문에 야기된 분쟁, 둘째, 선수단이 등록자격, 시험참가자격으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 셋째, 코치와 심판자격의 확정 혹은 등급인정으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 넷째, 흥분제 사용으로 야기된 분쟁, 다섯째, 경기시간과 지점 혹은 기타경기사항 변경으로 인해 야기된 분쟁, 여섯째, 경기참가에 따른 보수, 상금 및 기타수익의 사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 일곱째, 시험 성격의 스포츠활동 중 발생하는 기술적인 분쟁, 여덟째, 구기종목에서 팬 폭력으로 야기된 분쟁, 아홉째, 시험 중 선수와 심판, 코치간에 폭력사건으로 야기된 분쟁,

2) 林世行, “我國體育仲裁現狀及構建體育仲裁制度建議”, 『首都體育學院學報』, 2009年7月, 408頁。

3) 林世行, 위의 논문, 409頁。

열 번째, 선수 간에 시합으로 인하여 조성된 인신상해, 사망사건으로 야기된 분쟁, 열한 번째,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야기된 분쟁, 열두 번째, 스포츠센터 관리방해로 야기된 분쟁, 열세 번째, 스포츠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열네 번째, 스포츠단체 혹은 스포츠 클럽의 처벌불복으로 야기된 분쟁, 열다섯 번째, 스포츠조직 내부의 분쟁, 예로 스포츠단체와 각 스포츠클럽 내부 기관의 설치와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분쟁, 관련종사자의 선거와 임면, 조정 등으로 발생한 분쟁, 체벌, 선수구타와 체벌 등으로 야기된 분쟁 등이 있다. 열여섯 번째, 또한 스포츠활동 가운데 발생한 각종 계약분쟁이 있는데 스포츠경기 텔레비전 전송권 허가계약분쟁, 스포츠찬조계약분쟁, 시합담보계약분쟁, 스포츠중개인계약분쟁, 스포츠보험계약분쟁, 선수와 클럽간에 고용계약으로 인한 분쟁, 훈장수여자 등 근로자와 체육 협회 혹은 클럽팀과의 노동계약분쟁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활동 중 재산권 귀속으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합주최권으로 인해 야기된 분쟁, 스포츠광고권으로 인해 야기된 분쟁, 운동장 임대차 등으로 인해 야기된 분쟁, 스포츠선수의 명예권과 초상권으로 인해 야기된 분쟁, 스포츠선수의 부상 보장권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 스포츠 선수의 계약금 지불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이 그것이다.<sup>4)</sup> 스포츠게임에 있어서 전형적이고 특수한 분쟁은 스포츠중재기관 관할로 송부하고, 기타중재기관의 중재범위에 부합하지만 스포츠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쟁은 스포츠중재기관이 관할하도록 하거나 기타중재기관 혹은 사법부문이 관할하도록 송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분쟁을 스포츠중재기관 관할에 송부하여 엄중하게 공정원칙을 위반하거나 기본적인 정당한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기타 중재기관이나 사법부문이 관할하도록 제출하여야만 하며, 스포츠활동 중 형법에 관련된 분쟁은 사법부가 관할하도록 송부해야만 한다.<sup>5)</sup>

## (2) 스포츠중재 시 최소범위<sup>6)</sup> 적용

스포츠활동 중에 발생하는 분쟁은 스포츠 고유의 특성을 구비하고 있으면 관련스포츠부문이 처리하도록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스포츠중재기관이 일심종결제를 채택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스포츠시합에서의 구체적인 분쟁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쟁은 임시심판과 임시중재위원회가 관리를 책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포츠특성을 지닌 분쟁을 기타중재기관이나 사법부에 넘겨서 해결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타중재기관의 중재원이나 법원 내 판사는 스포츠 분야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기타중재기관이나 사법부가 이런 분쟁을 처리하면 스포츠경기가 규율하고 있는 통일성을 깨뜨리게 되어 국제스포츠기관의 규범과 충돌하게 되어 그 결과 중국 스포츠업계의 발전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4) 何正兵, “論我國體育仲裁的適用範圍”, 『成都體育學院學報』, 2008年第2期, 19-20頁.

5) 何正兵, 위의 논문, 20頁.

6) 기타 중재기관이나 사법부에 송부하는 중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게 될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분쟁유형은 상술한 유형 가운데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가 대부분 포함된다.

### (3) 중국 형사소송제도와 연계

스포츠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또 각종 형사죄명 및 성립요건을 보면, 아래 열거된 스포츠분쟁은 형사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첫째, 구기종목에서 팬들의 폭력사건이다.<sup>7)</sup> 폭력사건 중 팬들이 저지른 방화죄<sup>8)</sup>(형법 제114-115조에 해당), 과실치사죄<sup>9)</sup>, 고의상해죄<sup>10)</sup>, 과실치상죄<sup>11)</sup>, 고의에 의한 스포츠 공공기물 훼손죄<sup>12)</sup>, 팬들끼리의 난투극<sup>13)</sup>, 혹은 기타 일반 민사책임사고를 조성하는 경우 이미 명백히 형법에 저촉되거나 운동장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형사사법부가 처리해야 한다. 두 번째, 운동선수, 심판, 코치간의 난투극사건이 있다.<sup>14)</sup> 집단난투극으로 인하여 과실치사죄, 고의상해죄, 과실치상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에 의해 형사사법부가 해결해야 하며, 만약 난투극이 기물파손 등으로 민사책임을 구성한다면 이 경우 스포츠중재기관이 해결한다. 세 번째, 선수간에 시합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 및 사망사건이다. 이러한 사고 가운데 사고 일방 혹은 쌍방이 조성한 상해와 사망은 과실로 야기된 것이다. 만약 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스포츠시합에서 상당부분이 양팀 쌍방간에 신체적 접촉은 불가피하다. 심한 경우 부상이나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예측가능하거나 회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법원이 판결하기보다는 스포츠중재기관(다른 스포츠기관을 포함한다)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사건이다. 이것은 불량품 제조·판매죄를 구성한다.<sup>15)</sup> 법리학적으로 스포츠맨십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형법 제140조 규정에 의해 불량품을 만들어낸 것으로 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한편 이러한 범죄 배후에는 심판매수죄<sup>16)</sup>와 스포츠클럽 매수죄<sup>17)</sup>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심판의 이런 행위는 형법에서는 수뢰죄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으나 성질과 발생시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수뢰죄를 구성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형법 수정이나 사법해석을 통해 이것을 수뢰죄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스포츠팀이 집단수뢰죄를 구성

7) 何正兵, 앞의 논문, 20頁.

8) 중국형법 제114-115조에 해당한다.

9) 중국형법 제233조에 해당한다.

10) 중국형법 제234조에 해당한다.

11) 중국형법 제235조에 해당한다.

12) 중국형법 제275조에 해당한다.

13) 중국형법 제292조 제1항에 해당한다.

14) 何正兵, 앞의 논문, 20頁.

15) 중국형법 제140조에 해당한다.

16) 중국형법 제385조에 해당한다.

17) 중국형법 제387조에 해당한다.

하며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판례는 공소 혹은 소송형식으로 사법개입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프로스포츠팀의 관리질서 방해가 있다.<sup>18)</sup> 이것은 프로팀, 코치 혹은 선수가 수뢰를 하거나, 승부조작과 편파판정으로 회사 및 기업임직원 수뢰죄<sup>19)</sup>를 구성하거나 회사수뢰죄<sup>20)</sup>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프로스포츠팀의 관리시스템을 보면 법적 성격은 회사형에 속하고 대부분 유한책임회사이며 선수와 코치는 임직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이미 범죄를 구성하는데 처리과정에서 사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유형의 사건이 민사책임에 관련된다면 스포츠중재기관이나 기타중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여섯째, 스포츠지재권 침해사건이다. 張厚福의 《스포츠지재권의 탄생 및 객체》<sup>21)</sup>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스포츠지재권은 스포츠조직, 스포츠종사자, 스포츠경영자 및 스폰서가 법에 따라 누리는 스포츠 지적노동력의 성과이자 경영지표 내지 신뢰의 권리이다. 여기에는 스포츠경기와 같은 스포츠저작권, 스포츠브랜드와 같은 스포츠특허권, 스포츠제품 명칭과 같은 스포츠상표권, 스포츠경기 텔레비전 중계권, 올림픽 브랜드 등을 포함한다.<sup>22)</sup> 올림픽브랜드의 보호는 이미 「올림픽브랜드 보호조례」의 형식으로 확정된 것으로 기타 일부 스포츠지재권은 법률·법규나 규장형식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 중국에서 스포츠지재권 침해사건의 경우 일부는 형법에 관련되어 있으며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 사법부가 개입하게 된다. 만약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관련 정부부처로 보내지거나 민상사중재기관이나 스포츠중재기관이 해결하게 된다.

#### (4) 행정宥議 및 행정소송제도 활용

행정宥議의 특징은 당사자가 불법 및 불공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시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분쟁에 속하는 사안은 중국의 경우 스포츠중재기관은 일률적으로 관할할 권리가 없다. 스포츠분야에서는 스포츠행정기관이 관련되는데 국가스포츠총국, 각종 사무관리센터, 지방스포츠국 등 스포츠행정기관 등이 있다. 직권남용 등의 원인으로 불법 혹은 불공정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선수와 코치, 심판, 프로스포츠팀 혹은 중국체육협회는 모두 행정宥議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宥議 및 행정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행정인가계약으로 인한 분쟁이다.<sup>23)</sup> 스포츠행정계약이라 함은 스포츠행정기관이 모종의 스포츠사업을 위해 개인, 단체, 기업 등 민사주체와 특정 행정인가사항에 대

18) 何正兵, 앞의 논문, 21頁.

19) 중국형법 제163조에 해당한다.

20) 중국형법 제164조에 해당한다.

21) 張厚福, “体育知識產權的產生与客体”, 『体育科學』, 2001(2), 5頁.

22) 何正兵, 앞의 논문, 21頁.

23) 何正兵, 위의 논문, 21頁.

해 서명을 하는 계약이다. 중국에서 이러한 계약은 민사계약과는 상이하며 실질적으로 변형된 행정명령에 속한다. 따라서 이런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민사주체인 상대방이 제기한 행정ᄇ議 및 행정소송을 인가해야만 하며 중재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면 안된다. 두 번째, 스포츠행정기관이 프로팀 혹은 스포츠단체 권익을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이다. 이런 분쟁은 당사자 일방이 행정ᄇ議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세 번째, 선수 상해보장 침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 및 프로선수의 보수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이다. 이런 분쟁에 있는 프로선수의 상해보장권이나 취업보수권은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종사자의 불법 혹은 불공정한 행정행위로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ᄇ議 및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여야만 한다.

한편 스포츠단체나 프로팀의 처벌불복으로 일어난 분쟁에 행정쟁의의 혐의가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토론한다. 2001년 10월 16일 중국축구협회 명의로 제정한 足紀字(2001)14호의 ‘四川綿陽, 成都五牛, 長春亞泰, 江蘇舜天 및 浙江綠城프로축구팀 처리에 관한 결정’<sup>24)</sup>에서 상술한 다섯 개의 축구팀에 대해 각기 상이한 처벌을 내렸다. 長春亞泰 프로축구팀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중국축구협회가 관리권한을 남용하였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제소하였다. 중국축구협회약관에 규정된 사항으로는 중국축구협회는 전국축구경기의 관리를 책임지는 스포츠협회로서 시스템적으로는 불합리한 면이 있고 행정력이 강한 특징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인가된 스포츠단체이며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협회의 약관위반으로 인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만약 사법부가 축구협회와 같은 공공기관에 지나친 간섭을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구협회나 프로스포츠팀에서는 非범죄성격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분쟁목적물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거나 혹은 스포츠중재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거나 일반 중재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Ⅲ. 스포츠중재의 안전수리범위

어떠한 스포츠중재가 스포츠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포츠경기중에 발생한 분쟁이어야 한다는 점, 또 해당분쟁이 중재가능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중재합의나 중재를 거쳐야 하는 범위에 속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sup>25)</sup> 이러한 스포츠중재의 안전수리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서구 주요국가와 IOC 등 국제스포츠기구의 현황을 고찰

24) 何正兵, 위의 논문, 22頁.

25) 朱文英, “体育仲裁受案範圍研究”, 『天津体育學院學報』, 2007年第1期, 23頁.

하고 중국의 안전수리범위를 차례대로 알아보기로 한다.

## 1. 서방의 입법례 및 IOC 스포츠중재

영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자금이 관련된 스포츠분쟁이건 순수한 스포츠분쟁이건 법원이 스포츠분쟁에 간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스포츠협회 내부의 재결기관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축구협회 규율중재위원회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만약 당사자가 협회 내부결정에 불복하면 스포츠중재기관이나 법원이 분쟁을 처리한다.<sup>26)</sup> 독일의 경우 스포츠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해당종목협회 내부구제절차를 선택할수도 있고 법원에 제소할수도 있다. 그러나 EU통합으로 인해 더 많은 당사자들이 스포츠중재절차 선택으로 스포츠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독일법원은 스포츠분쟁 심리 시에 단순히 관련 법률절차의 합법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고 스포츠협회가 지목한 사실에 대한 재결은 법원은 통상적으로 판단할 권리가 없다. 이것은 스포츠자치에 기반을 둔 독일 특유의 규정으로 협회의 자유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sup>27)</sup> 미국법원은 스포츠단체 구성원이 사회단체 구성원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입은 자발적이다. 스포츠단체 구성원은 스포츠협회 규범과 관할권의 구속을 받는다. 오로지 스포츠협회가 채택한 합리적인 규범과 약관이 사회공공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합리적인 운용을 얻는다면 미국법원은 일반적으로 간여하지 않는다.<sup>28)</sup> 또한 선수와 해당구단과의 분쟁에 속하는 경우 美 법원은 쉽게 간여하지 않는다. 국제시합에 참가하는 선수의 시합참가자격에 대해 법원이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종합해보면 歐美의 서로 상이한 스포츠중재제도의 중재범위 관련규정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우선 스포츠중재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경제형 스포츠분쟁과 순수형 스포츠분쟁으로 나누고 전자에는 관용적인 입법모델을 채택하였다. 즉 이러한 스포츠분쟁은 협회 내부중재부문이 해결하며 스포츠중재전문기관에 교부할 수도 있다. 동시에 제소할수도 있으며 스포츠중재기관은 전속관할권이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협회 내부 중재를 우선절차로 하고 스포츠중재기구를 순수형 스포츠분쟁의 상소절차로 하였으며, 반드시 증거를 제출하여 동 재결과정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또는 뇌물 수수 등의 부패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즉 법원은 이러한 분쟁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sup>29)</sup>

한편 서방의 입법례와 관련하여 IOC 스포츠중재의 안전수리범위가 있다.<sup>30)</sup> 1983년

26) Simon Gardiner. Sports Law(2nd edition), London: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1, p.251.

27) 劉同衆·劉佳·唐晋·李君遠, "Scope and Mode of Foreign Arbitration for Sport on Legislation and Inspiration to Our Revelation of Arbitration for Sport", 『体育与科學』2011年11月, 43頁.

28) Marcia B. Nelson. Stuck between interlocking rings: Efforts to resolve the conflicting demands placed on olympic national governing bodies. Van J Int'l L, 1993, 26(5), p.907.

29) 劉同衆·劉佳·唐晋·李君遠, 앞의 논문, 44頁.



IOC는 국제스포츠중재법원약관을 정식으로 통과시켜 1984년 6월 30일자로 실시하였다. 최초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IOC에 속했는데 1991년 CAS가 스포츠중재지침을 반포하여 그 어떠한 국제스포츠연맹 약관 혹은 규칙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연맹 내부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최후에는 국제스포츠중재법원이 해결하여야 하며, 일반법원에서 제소하면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후 CAS는 최종적으로 IOC에서 독립하였는데 이것이 IOC 및 수많은 국가의 올림픽위원회가 국제중재법원의 중재관할을 승인하게 되었고 일부국가에서는 약관에 CAS가 관련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임을 약정하였다. CAS는 두 가지 상이한 중재절차를 설립하였는데 하나가 일반중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상소안건에 적용되는 절차이다. 전자는 계약의 해석 혹은 계약이행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심리범위는 찬조, 텔레비전방송권, 스포츠시설 및 용품공급, 노동계약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사분쟁 또한 국제스포츠중재원이 중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스포츠시합 중에 발생한 돌발사고로 인한 분쟁 등이 예이다.<sup>31)</sup> 후자인 상소안건에 적용되는 절차는 스포츠키관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안건을 심리하며 일반적으로 규율과 관련이 있고, 스테로이드 등 흥분제문제를 다룬다. 이 외에 CAS는 운동장에서의 폭력, 심판의 권한남용 등도 심리한다. 상소안건에 적용되는 절차는 또한 선수의 시합참가자격과 시합참가금지분쟁, 약물검사로 인한 흥분제분쟁, 스포츠계약분쟁 및 특정시합에 참가한 선수의 국적 등을 해결할 수 있다.<sup>32)</sup> 즉 국제중재법원이 설립한 것은 광범위한 중재관할로 스포츠시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관할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분쟁은 서로 상이한 중재절차를 적용하는데 상소안건에 적용하지 않는 절차를 조정하는 것이 예이다.<sup>33)</sup> 약물남용에 관한 분쟁의 경우 더 엄격한 중재절차를 두고 있는데 일심종결이 각국 스포츠중재절차에서 통상적으로 취하고 있는 방법이다. 만약 一國 국내스포츠중재기관의 재결 이후 당사자가 중재결정에 불복하면 CAS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CAS가 최종결정을 내리는 확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 2. 중국의 입법례

중국 스포츠제도와 관련 법률제도는 기타국가와는 차별화된 독립성을 지니면서 중국만의 고유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중재<sup>34)</sup>와 일반중재 안건수리범위<sup>35)</sup>의 교차문제이다.<sup>36)</sup> 스포츠중재는 중재

30) 劉同衆·劉佳·唐晉·李君遠, 위의 논문, 44頁.

31) 黃世席, “國際體育仲裁員普通仲裁制度淺析”, 『體育與科學』, 2005(6), 17頁.

32) 黃世席, “國際體育爭議解決機制研究”, 武漢大學出版社, 2007, 89頁.

33) 劉同衆·劉佳·唐晉·李君遠, 앞의 논문, 44頁.

34) 반드시 스포츠시합과정 중에서 발생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朱文英, “體育仲裁受案範圍研究”, 『天津體育學院學報』, 2007年第1期, 23頁.

에 속한다. 따라서 모든 스포츠시합의 분쟁은 스포츠중재범위에 속하며 이럴 경우 스포츠중재는 민사 및 노동중재와 안전수리범위에서 교차현상이 발생한다. 스포츠시합과 관련한 경제분쟁은 스포츠 찬조, 보험, 방송권 등 계약형분쟁이다. 이에 반해 사회체육이나 학교 체육, 매스게임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스포츠중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분쟁해결시스템을 선택해야만 한다.<sup>37)</sup> 지위가 평등한 민사주체는 당연히 민사중재의 중재범위에 귀속되며 스포츠중재의 중재범위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의 민사중재체제와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이런 분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중재청 신설에 대해서는 이중설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선수신분에 관한 분쟁은 주로 선수의 트레이드, 이적<sup>38)</sup> 및 시합참가자격에 대한 분쟁을 포함하며 일부학설에서는 선수신분에 대한 분쟁은 중국 국내 노동중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러나 이것은 노동중재 적용의 전제인 지위가 평등한 민사주체를 간과한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의 현행제도가 아직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 하에서 선수는 한 국가의 자산인 것이다. 당연히 선수와 스포츠행정기관 사이에는 일정한 종속관계가 존재한다. 예로 중국국가스포츠총국 수영관리센터가 田亮의 국가대표선수자격을 다시는 보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은 당사자지위의 평등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중재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sup>39)</sup> 그러면 스포츠중재의 경우에도 상술한 분쟁에서 관할권을 갖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국제관례를 보면 이런 분쟁은 스포츠중재기관에 넘겨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외스포츠가 채택하는 것은 프로화로서 선수의 경우 특정조직에 소속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스포츠중재제도가 중재범위를 확립할 때 이것을 직접 중재범위에 넣을 필요는 없으며 보류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스포츠중재와 민사소송안전수리범위의 교차문제이다.<sup>40)</sup> 스포츠 찬조, 보험, 방송권 등의 경제형분쟁이 스포츠중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스포츠중재와 민사소송절차의

35) 1993년 1월 7일 중국은 ICSID 협약비준서를 세계은행에 제출하면서 이 협약 제25(4)조 29)에 근거하여 단지 수용 및 국유화로 인해 야기된 보상액 관련 분쟁에 한해서만 ICSID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이 통지는 중국은 수용 및 국유화로 인해 야기된 보상액과 관련된 분쟁을 ICSID 중재에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투자와 관련된 상기 이외의 분쟁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국 법원에 분쟁의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중국의 ICSID 협약 가입 당시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 중국이 체결한 다량의 BIT의 관련 규정에도 대부분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에 있어서 수용보상액에 관한 분쟁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기타 투자분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모든 투자분쟁으로 그 중재범위를 확대하는 단계적인 확대전략을 취하였다. 하현수, “중국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3권 4호, 2013.12, 8면, 19면.

36) 劉同衆·劉佳·唐晋·李君遠, 앞의 논문, 44頁.

37) 朱文英, “体育仲裁受案範圍研究”, 『天津体育学院學報』, 2007年第1期, 23頁.

38) 중국 《체육법》 제29조는 단일스포츠협회가 해당종목의 선수에 대해 등록관리를 한다. 등록을 거친 선수는 국무원 스포츠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관련 스포츠시합 및 스포츠팀간의 인적 교류에 참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등록을 거쳐야만 관련규정에 의해 시합참가가 가능한 것이다. 중국 《스포츠시합 심판 관리방법(시법)》 제19조는 각급 심판의 심사부문은 2년마다 반드시 인가한 심판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코치와 심판 모두 교육을 거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39) 劉同衆·劉佳·唐晋·李君遠, 앞의 논문, 44頁.

40) 劉同衆·劉佳·唐晋·李君遠, 위의 논문, 44頁.

연결 또한 체계적으로 규범해야 한다. 법원은 순수형 스포츠분쟁의 경우 반드시 관할권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스포츠중재의 전속관할로 포함해야 한다면 전술한 원칙은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스포츠중재절차 중의 협의절차가 불법이거나 기타 공정한 재결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중재재결을 취소하면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스포츠중재기관이 다시 새로이 중재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sup>41)</sup> 또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스포츠중재재결의 집행문제와 관련되는데 규율을 위반한 선수나 클럽 팀에 대해 벌금부과처벌을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중재재결은 민소법 관련규정에 의해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해야만 한다.

셋째, 스포츠중재와 형사소송안건수리범위의 교차문제이다.<sup>42)</sup> 흥분제복용사건과 같이 일반적으로 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스포츠업종의 약관이나 규칙 등으로 처리하여 스포츠중재가 전속관할을 행사한다. 그러나 스포츠운동규율을 위반한 분쟁은 중국의 형법 또한 저촉하게 된다. 예로 스포츠 불법도박 등의 행위는 간접적으로 판사의 편파판정 내지 선수의 승부조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형사책임에 관련된 안건은 스포츠중재과정 중에서 주도적으로 공안기관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사건은 출전금지 등 스포츠기관의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되어 규율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스포츠기관의 규율처벌의 경우 해당종목 내부의 자율행위이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종종 법원의 안건수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한다.<sup>43)</sup> 이 때문에 당사자가 만약 스포츠조직에 대한 처벌에 불복하면 스포츠중재기관에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포츠계약분쟁의 경우 고용계약 외에 기타계약의 성질은 일반 상사계약과 기본적으로 같아서 《중재법》 규정을 적용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쌍방당사자가 중재합의나 중재조항이 존재하거나 혹은 분쟁발생 이후 스포츠중재 진행을 동의한다면 마땅히 스포츠중재 안건수리범위에 속해야 하며, 스포츠중재기관은 이를 수리해서 재결을 진행하여야만 한다.

41) 劉同衆·劉佳·唐晋·李君遠, 위의 논문, 44頁.

42) 劉同衆·劉佳·唐晋·李君遠, 위의 논문, 44頁.

43) 朱文英, 앞의 논문, 24頁.

## IV. 중국의 스포츠 중재절차

### 1.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중재절차

공정성은 중국 스포츠중재절차에 있어 최우선적인 목표이다. 중국 스포츠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우선 중국 국내에서는 중국 《중재법》과 《중재위원회 중재임시규칙시범문서》에서 중국의 스포츠중재절차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중재 안전수리범위, 스포츠중재의 신청 및 수리, 긴급조치와 위탁대리, 스포츠중재청의 구성, 개정과 재결, 스포츠중재 재결의 사법심사 및 집행 등을 포함한다.<sup>44)</sup> 또한 《중국 스포츠 중재위원회 약관》과 《스포츠 중재위원회 스포츠중재규칙》 초안도 중국 스포츠 중재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였다.<sup>45)</sup> 대외적으로는 1984년에 설립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절차 또한 중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4년 스포츠중재원이 IOC 산하에서 독립하여 현재 국가간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올림픽기간에 발생하는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주요기구가 되었다. 국제스포츠중재원의 절차는 보통중재절차를 포함하는데 스포츠 관련 상사분쟁을 조정한다. 스포츠경기전송권 분쟁, 스포츠용품 구매협약 및 스포츠 관련 대리협약에 대한 분쟁 등이 그 예로<sup>46)</sup>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일반중재사무소가 중재청을 구성하고 중재를 담당한다. 상술한 중재절차는 관련 스포츠기관이 내린 재결에 불복하는 분쟁(시합 참가자격분쟁이나 흥분제사용 분쟁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중재사무소를 상소하여 중재청 구성을 담당한다. 중재절차 자문은 스포츠와 관련된 규칙의 이해와 해석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중재자문청을 설립하여 관할을 책임지고 있다.<sup>47)</sup>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스포츠중재규칙」규정에 의하면 중재지는 스위스 로잔이고, 중재언어는 영어와 불어, 대리 및 협조의 경우 당사자가 선택한 사람이 대리하거나 협조할 수 있고, 통지와 통신의 경우 당사자의 모든 통지와 통신을 송달하는 경우 중재원사무실을 통해야만 한다. 이 외에 시한의 확정, 임시구제조치, 중재원의 독립성과 자격 및 중재원의 회피, 교환 등의 규율은 일반적인 절차규정으로 모든 중재절차에 적용된다. 이 외에 일반중재절차, 상소중재절차 및 자문중재절차에 적용되는 특수규정이 있다.<sup>48)</sup>

44) 郭樹理, “建立中國體育仲裁制度的設想”, 『法治論壇』, 2004(1), 64-66頁.

45) 陸攀·孔云龍, “論我國體育仲裁程序的建構”, 『安徽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年1月, 67頁.

46) 陸攀·孔云龍, 위의 논문, 67頁.

47) 張春良, “論奧運會體育仲裁程序”, 『西安體育學院學報』, 2007, 24(5), 20-21頁.

48) <http://www.chinalawyer.com/news/18500/188/2006/8/li126224821148600214490-0.htm>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절차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원화된 중재절차규정을 입법과 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일반규정과 보통절차, 특별절차를 입법으로 규정하고 자문절차는 두지 않는 것이다.<sup>49)</sup>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스포츠중재규칙」R44.4조는 속성절차를 규정하여 보통절차의 하나의 조항으로 두었다. 스포츠분쟁의 시효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속성절차 혹은 간이절차를 두어야 한다. 단독설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즉 중국의 스포츠중재절차는 차례대로 일반규정, 보통절차, 간이절차, 특별절차의 네 부분<sup>50)</sup>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중국 스포츠 중재위원회의 단일중재절차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다원화된 중재절차 비교

상기 두 가지 중재절차모델 가운데 후자가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중국 스포츠중재위원회는 국제스포츠중재원과 같이 일반중재청, 상소중재청 등을 설립할 필요없이 스포츠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사치원칙을 존중하며 사안의 성격과 특징에 근거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재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선수생명이 짧기 때문에 스포츠중재는 공정성의 기초 위에 최대한 신속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sup>51)</sup> 중국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중재시한의 설정에 있어서 중재법에 대한 관련기한규정은 유동적으로 단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단축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중재법》 단일절차에는 중국의 스포츠중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각기 상이한 스포츠분쟁에 대해서 선별대우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원화된 중재절차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간이절차의 기한규정으로 특별절차보다 더 짧게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일반절차와 간이절차, 특별절차가 주의해야 할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수리범위의 구분이다. 스포츠중재합의가 있고 구체적인 중재청구와 사실과 이유가 존재하면 스포츠중재안전 수리범위의 스포츠분쟁에 속하게 되어 스포츠중재위원회가 이를 수리한다. 이를 감안하면 스포츠중재 일반절차는 내부분쟁해결시스템이 없는 일반 스포츠분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스포츠중재 특별절차는 내부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결정 혹은 처벌에 불복하는 스포츠분쟁을 수리한다. 스포츠간이절차는 내부분쟁해결시스템이 없는 간단하고 평이한 스포츠분쟁을 수리한다. 스포츠시합에 참가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사항에 의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분쟁을 간이절차에서 담당한다. 여기에서의 간이화란 관련기한, 시한, 중재청 조직방식, 심리방식의 관련규정을 간이

49) 湯衛東, “中國體育仲裁的程序建構探析”, 『體育與科學』, 2009, 30(2), 30-33.

50) 陸攀·孔云龍, 앞의 논문, 67頁.

51) 陸攀·孔云龍, 위의 논문, 67頁.

화한다는 것으로 중재청과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간이화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sup>52)</sup> 둘째, 내부구제조치의 선이행이다. 특별절차의 前置절차로서 신속히 해결해야 할 일부사례를 제외하고 내부분쟁해결시스템이 있는 스포츠분쟁은 우선 최대한 자체 구제를 시도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특별절차를 활용한다. 내부구제시스템이 없는 경우 일반절차나 간이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입법으로 내부구제시스템을 스포츠중재의 前置절차로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중재청의 구성과 중재원의 확정이다. 일반절차에 의한 중재청의 구성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 3명이 중재원이 되거나 1명 중재원으로 구성되며 쌍방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청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특별절차의 경우 3명의 중재원으로 중재청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개정과 재결단계의 비교이다. 안전심리형식을 보면 간이절차는 융통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중재청은 개정심리를 할수도 있고 서면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양자를 결합할 수도 있다. 스포츠중재의 일반절차와 특별절차는 개정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기한은 답변서와 기타서류를 제출하는 기한, 중재원 위임기한, 反訴기한, 사전개정통지기한 및 각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 등이 있는데 간이절차는 특별절차보다 짧아야 하고 특별절차는 보통절차보다 짧아야 한다.

재결기한규정에 있어서 간이절차에서는 개정심리의 안전 재결서는 개정심리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한다. 서면심리안전의 경우 재결서는 중재청 성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정한다. 만약 사건이 복잡하거나 일부 증거가 단기 내에 확보되기 어려우면 스포츠중재위원회는 스포츠중재청의 청구하에 재결서의 기한에 대해 연장을 할지 안할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확정한다. 일반절차 재결기한은 상사중재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고 특별절차 재결기한은 간이절차와 일반절차 사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증거분배에 있어서 일반절차 혹은 간이절차는 상사중재를 참고할 수 있다. 반면 특별절차가 수리하는 것이 내부분쟁해결시스템으로 주도한 결정이나 처벌불복의 스포츠분쟁이라면 스포츠조직과 선수간의 역량은 확실히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특별절차의 증거분배에 있어서 입증책임원칙을 채택하여야만 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중재에서 조정절차를 일반절차와 간이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규정해야만 한다. 프랑스 올림픽위원회는 이미 조정을 중재 전의 필수절차로 정한지 오래이며 CAS 「스포츠중재규칙」제R42조는 의장이 안전을 중재청에 교부하기 전 및 교부 이후의 중재청은 언제든지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를 거쳐 화해내용은 재결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52) 陸攀·孔云龍, 위의 논문, 67頁。

## V. 영국 스포츠중재제도로부터의 시사점 및 중국 스포츠중재제도의 입법과제

### 1. 영국의 스포츠중재 절차

「중재규칙」은 2002년 1월 16일 개정 이후 통과되었는데 총 16조로 되어 있다. 영국 스포츠분쟁해결센터(SRs)의 중재상소절차와 일반중재절차의 안전수리유형은 각각 상이한데 어느 절차 적용에 있어서 의문이 있는 경우 SRs의 집행의장이 어느 절차를 결정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두 중재절차는 공통점과 상이점 모두 존재한다. 먼저 상이한 부분부터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 상소중재절차

상소절차와 관련하여 SRs의 「중재규칙」은 신청인이 우선 SRs에 간단한 상소성명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한제한이 따른다. 만약 스포츠기관이 제소에 대해 기한의 규정이 있다면 동 스포츠기관 규정에 따르고 만약 규정이 없으면 상소신청자는 동 스포츠기관 관련문제에 대해 결정한 이후 21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소신청인은 SRs에 상세한 상소신청서를 교부해야 하고 여기에는 안건의 진술, 관련법률, 유용한 문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SRs는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한다. SRs는 적시에 상소신청서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피신청인이 상소신청서 사본을 받은 이후 14일 내에 SRs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부 혹은 부분 청구를 동의 혹은 거절할 수 있고, 관련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데에 근거가 되는 문서 복사본을 제공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SRs는 피신청인의 답변서와 답변의견을 수리하지 않으며 중재청이 동의하거나 직접지시한 정황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재절차와 재결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SRs의 「중재규칙」은 중재청은 상소신청서를 받은 이후 2달 내에 서면재결을 하여야 하며, 재결서는 상세하게 재결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3)</sup>

53) 肖永平·周青山, “英國體育仲裁制度及其對我國的啟示”, 『貴州警察職業學院學報』, 2010(01), 11頁。

## (2) 일반중재절차

이것은 상소중재절차 관할사건 이외의 모든 중재가능한 스포츠분쟁을 말한다. 신청인은 우선 SRs에 간단한 중재신청의향서를 제출하고 21일 내에 SRs에 상세한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에는 사건의 진술, 관련법률, 유용한 문서, 적용할 절차의 건의 등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중재신청 철회로 인정한다. 상소중재절차와 상이한 점은 답변서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구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것 외에 신청인에 대해 반대청구(the Counterclaim)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54)</sup> 만약 피신청인이 反청구를 제기하면 관련법률과 상응하는 사실을 제공해야 하고, 복사본 또한 SRs가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청인은 복사본을 받은 이후 21일 이내 상응하는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 미제출이 중재절차 진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SRs가 수리하는 중재안건수량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스포츠항목의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sup>55)</sup> 중재사례 하나를 고찰하면 2명의 선수가 지속적으로 스포츠관리기관에 의해 장기간 시합출전금지를 당하였으며 처벌받은 당사자들은 규율처벌청취회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해당처벌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해당분쟁을 SRs 중재에 교부하여 처리하기로 협의하였다. 중재청은 우선 당사자에게 자신의 관할권을 분명히 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정일과 지점을 공지하였다. 개정시리 및 쌍방의 의견청취 이후 중재청은 중재재결을 내렸는데 스포츠관리기관의 처벌결정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재결서에서 중재청은 동시에 해당 스포츠관리기관의 규율처벌청취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 중재에는 총 3400파운드가 소요되었으며 예상되는 소송비용만 최소 3만 파운드였다.<sup>56)</sup> SDRP에서 발간하는 연례보고서는 아래 3개의 전형적인 중재사례 제시를 통해 중재절차의 우월성을 증명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당사자간에 지재권 침해로 인한 분쟁으로 해당 지적재산권과 스포츠시합에서 사용하는 상표와 관련이 있었다. 이 분쟁은 9개월동안 지속되었으며 해결이 나지 않았다. 결국 SDRP의 도움하에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달성하였는데 1명의 왕실변호사를 중재원으로 임명하고 동 분쟁 이후에는 서면중재방식으로 해결하여 당사자의 비용을 최저로 낮추었으며 4개월 내에 재결을 이끌어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월드컵 경기 선발규칙에 대한 해석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SDRP의 1명 중재원이 서면중재절차를 통해 이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10일 내에 쌍방당사자로 하여금 수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세 번째 사례는 1명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선발절차에 불복한 것이었는데 이 사안은 2주 이후 중재절차가 진행되었다. SDRP의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청의 개정심리는 7일 내로 당사자가 수용한 재결을 이끌어내었다.<sup>57)</sup>

54) 肖永平·周青山, 위의 논문, 11頁.

55) Simon Gardiner and others, Sports Law, London, Cavendish Pub., 3rd ed., 2005, p.247.

56) Related Documents Sport Resolutions Cse Studies, <http://www.sportresolutions.co.uk/page.asp?section=118&sectionTitle=Example+Cases>, 2009-10-31.

57) Ian S.Blackshaw, Mediating Sports Disput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Hague, T.M.C. Asser



## 2. 중국 스포츠 중재제도의 입법과제

### (1) 스포츠중재 적용범위의 입법과제

첫째, 중국스포츠중재 적용범위에 ‘반드시 스포츠중재기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 분쟁 및 스포츠중재기관이 해결가능한 스포츠분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에는 선수등록, 이적, 이적, 시합참가 등 자격문제로 야기된 분쟁, 코치, 심판자격 확정 혹은 등급인정으로 인해 야기된 분쟁, 흥분제사용으로 인한 분쟁, 경기시간과 지점 변경 혹은 기타 시합사항으로 인한 분쟁, 경기보수와 장려금 및 기타수익과 사용으로 발생한 분쟁이 있다.<sup>58)</sup> 후자에는 선수, 심판, 코치간에 주먹다짐으로 민사책임이 발생한 분쟁, 선수간에 시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상해·사망사건을 야기한 분쟁, 프로팀 관리질서를 방해하여 민사책임사건을 조성한 분쟁, 스포츠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분쟁, 프로팀 혹은 스포츠단체가 처벌에 불복하여 일으킨 분쟁, 스포츠단체와 각종 클럽팀 내부기관의 설치, 변경, 취소 등으로 야기된 계약 및 재산권 분쟁, 운동선수 처벌, 구타로 야기된 분쟁, 분쟁 쌍방당사자가 스포츠시스템에 귀속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의 스포츠시합담보계약분쟁, 스포츠중개계약분쟁 혹은 스포츠보험계약분쟁, 시합주최권 때문에 발생한 분쟁, 운동장 조차로 인한 분쟁, 선수 보수권 침해로 인한 분쟁, 각 프로팀의 명예의 선수 혹은 기타 노동계약 및 각종 협회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스포츠협회간에 발생한 노동중재범위에 관련된 노동분쟁, 非행정성격의 스포츠협회나 클럽팀이 선수 상해보장권과 보수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 스포츠단체 혹은 프로팀종사자가 선거와 임면,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인사분쟁, 선수와 구단이 임용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 그것이다.<sup>59)</sup> 다음으로 기타중재기관이 해결할 수 있지만 스포츠중재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스포츠중재로는 선수 명예훼손권, 초상권 침해로 야기된 분쟁, 스포츠광고권으로 야기된 분쟁, 스포츠찬조계약분쟁, 분쟁의 일방당사자가 스포츠시스템에 귀속된 상황 하에서 시합담보계약, 스포츠중개계약 혹은 스포츠보험계약으로 발생한 분쟁, 스포츠시합 텔레비전방송권 인가계약분쟁 등이 있다.<sup>60)</sup> 또 반드시 사법부에 교부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스포츠분쟁으로는 구기종목 시합에서 팬들의 폭력사태, 선수와 심판 및 코치간에 난투극으로 상해·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승부조작과 편파판정사건, 프로스포츠팀의 관리질서를 방해한 사건, 스포츠지적재산권 침해사건, 스포츠행정인가계약으로 발생한 분쟁 및 스포츠행정기관이 스포츠사회단체나 클럽팀의 권익을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이 그것이다.<sup>61)</sup>

Press, 2002, p.99-100.

58) 何正兵, 앞의 논문, 23頁.

59) 何正兵, 위의 논문, 23頁.

60) 何正兵, 위의 논문, 23頁.

61) 何正兵, 위의 논문, 23頁.

두 번째로 등록, 이동, 전직 등의 신분분쟁이 있다.<sup>62)</sup> 스포츠법으로 선수와 코치, 심판과 클럽팀신분권은 법에 따라 등록을 함으로써 탄생한다. 등록을 거친 선수여야만 관련규정에 따라 시합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에 관련된 분쟁은 전형적인 스포츠분쟁에 속하게 된다. 중국 프로선수의 이적시스템 또한 점차 체계가 형성되었으며 시간적 요소의 특징이 있고 스포츠조직 내부규정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로써 발생한 분쟁은 스포츠중재기관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선수자격에 등록이 필요한 것 외에 코치, 심판자격의 확립 및 등급인정 분쟁 또한 이러한 분쟁에 속하여 스포츠중재의 안전수리범위에 속하게 된다.<sup>63)</sup>

세 번째로 시합참가 자격분쟁이 있다.<sup>64)</sup> 국제시합에서 선수에 대해서는 자격요구가 있고 자격기준을 반포하고 자격확정방법을 규정하였다. 경기참가팀은 규정에 따라 대회에 참가할 선수와 코치를 선발하는데 이로 인한 분쟁은 스포츠영역 내에서 특수한 분쟁에 속한다. 선수와 코치, 스포츠타레이너를 포함하는 시합참가자격 분쟁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분쟁은 특수성을 갖는데 현재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와 코치의 선발과 확정은 한편으로는 선수와 클럽팀, 선발조직간의 계약관계이자 행정적인 강제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우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행정소송의 목적물은 구체적 행정행위로서 근거는 중국행정법률이다. 반면 자격선발과 확정의 전제는 계약, 선발규칙 혹은 기준에 근거한 것이지 행정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발기관의 행위에 대한 불복은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구제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상술한 분쟁은 스포츠중재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처벌규율에 관한 분쟁이 있다.<sup>65)</sup> 선수나 코치가 처벌받은 이후 스포츠단체 처벌규율의 기구와 절차가 완벽하지 못해서 적시에 충분하게 권리구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동시에 스포츠조직의 처벌규율은 조직내부의 정화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법원이 법원의 안전수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거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sup>66)</sup> 이 때문에 당사자가 만약 스포츠기관의 처벌에 불복하면 중재기관에서 구제를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다섯 번째로 스포츠계약분쟁이 있다. 예로 클럽팀과 선수, 코치와의 고용계약<sup>67)</sup>, 시합참

62) 林世行, 앞의 논문, 409頁.

63) 林世行, 위의 논문, 409頁.

64) 林世行, 위의 논문, 409頁.

65) 林世行, 위의 논문, 409頁.

66) 林世行, 위의 논문, 409頁.

67) 근로계약에 속한다는 학설로는 張笑世著·오일환譯, “중국에 있어서 스포츠선수임용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2006.4, 254-255면 참조; 선수와 구단간에는 복역기간중 종속관계가 존재한다. 중국 농구프로리그의 모 구단은 계약에서 선수의 의무에 관하여 직접 경기에 참가하든 하지 않는 선수는 반드시 구단과 중국 농구협회의 구단과 선수의 행위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구단은 선수에 대한 관리규정을 조정하여 제정할 권한이 있다. 낙성, 유상, 쌍무적인 법적 성질이 근로계약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선수임용계약의 문제로는 구단의 일방적 계약해제, 계약기한의 문제 등이 있다. 張笑世, “중국 프로리그의 법률문제 연구”, 『스포츠와 법』제5권, 2004년 10월, 194면; 한편 중국축구협회는 1999년 《축구매니저관리방법》을, 2000년에는 중국농구협회가 《농구매니저관리방법》을 공포하였다. 馬宏

가계약, 시합담보계약, 찬조계약 등이 있다. 또 프로팀과 프로팀간의 트레이드계약, 조차계약, 대회유치 및 참가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텔레비전방송권과 방송보도권계약, 스포츠 광고계약 등이다.<sup>68)</sup> 계약분쟁 외에 스포츠활동 중의 저작권, 기술보안권, 성명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산분쟁 또한 스포츠중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당사자간에는 반드시 중재합의 혹은 지적재산권사용계약 중의 중재조항이 존재하여야만 하며, 혹은 분쟁발생 이후 스포츠중재에 동의하여야 한다. 중국의 현행 법률제도를 보면 중국 국내선수의 근로계약분쟁은 스포츠중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수많은 스포츠가 프로화되었으며 선수와 소속팀이 계약에 의해 운영될 때, 구단은 전형적인 법인의 형태를 띤다. 이 때 이런 계약은 노동법상의 노동계약 혹은 고용계약에 속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노동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중재기구인 노동분쟁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 (2) 스포츠중재에 속하지 않는 범위

첫째, 심판의 현장판정 분쟁이다.<sup>69)</sup> 심판의 벌칙부과 등 기술적 분쟁에 중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스포츠계의 관례이다. 중국의 중재조례 또한 심판의 현장판정을 중재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재판의 악의적인 혹은 불성실한 행위는 중재범위에서의 배제원칙이 제외된다. 두 번째, 스포츠행정분쟁이다.<sup>70)</sup> 스포츠행정관리기관은 중국의 관련법률에 의해 스포츠를 관리하며 공권력에 기반을 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관리권 행사시 상대방의 법적 지위는 불평등하며 행정관리권 행사시 상대방과 발생하는 분쟁은 행정분쟁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은 중재기관이 중재할 수 없다. 이 외에 중국에서 스포츠협회<sup>71)</sup>의 관리활동은 상당히 복잡하다. 스포츠협회의 경우 내부관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중국의 일부 행정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비록 스포츠시합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 하더라도 스포츠중재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만약 스포츠협회 내부의 관리로 인한 분쟁이라면 스포츠중재 신청을 허용해야만 할 것이다.<sup>72)</sup>

### (3) 스포츠중재기관 설치의 개선방안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에는 오직 하나의 스포츠중재기관이 중국스포츠중재위원회<sup>73)</sup>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어 북경에 소재하고 있다.<sup>74)</sup>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스포츠분

俊·李恒广, "스포츠자치권을 논함", 『스포츠와 법』 제7권, 2005.10, 275면.

68) 林世行, 앞의 논문, 410頁.

69) 林世行, 위의 논문, 410頁.

70) 林世行, 위의 논문, 410頁.

71) 이와 관련하여 중국축구협회 약관 제2조 1항은 중국축구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서 축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유일한 전국적인 비영리성 사회단체법인이라고 규정하였다.

72) 林世行, 앞의 논문, 410頁.

73) 스포츠협회는 운동관리센터, 즉 국가스포츠행정관리부문과 같이 사무를 보고 사실은 인원은 같고 두 개 명

쟁안건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북경 외의 여러 권역별 도시에 스포츠중재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중국민법규정에 따라 하나의 조직은 완전하고 독립된 실체법인이 되어야 하며, 자기의 재산과 주소가 있음으로써 중재활동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증하고 어떠한 행정기관 및 기타기관의 간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중국 각 지역에 지사를 두고 경기가 열리는 기간에 임시로 운영되는 기관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스포츠중재위원회의 구성부분으로 각 지방 행정법규가 아닌 중앙의 통일된 스포츠중재규칙을 적용해야 하며 스포츠중재원 또한 임용이 필요시된다.<sup>75)</sup>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의 기능은 일반 보통스포츠판례를 재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 제소한 일반 보통 스포츠분쟁을 중재하여 스포츠찬조계약분쟁, 선수와 클럽팀간의 분쟁, 텔레비전 스포츠방송권 분쟁 등을 중재할 수 있다.<sup>76)</sup> 두 번째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자문의견을 낼 수 있다. 비록 자문의견이 중재재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권위성으로 인하여 자문의견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다.

#### (4) 스포츠중재합의의 형식

중재합의<sup>77)</sup>의 강제성<sup>78)</sup>은 단지 순수하게 중재가 가능한 스포츠분쟁에만 적용된다. 스포츠분쟁의 성격에 따라 스포츠분쟁은 스포츠분쟁과 스포츠와 관련있는 상사분쟁으로 구분되어 다루어진다. 상사중재의 경우 쌍방당사자는 분쟁을 스포츠중재 혹은 보통상사중재에

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실질은 여전히 행정관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항목별 스포츠협회의 소송위원회는 협회가 업종내분쟁을 해결하는 권력기구이고 소송위원회는 협회상무위원회가 지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위원회는 협회 산하기구로서 그 실질은 행정관리기관의 산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張笑世, “중국 프로리그의 법률문제 연구”, 『스포츠와 법』 제5권, 2004년 10월, 203면.

74) 林世行, 앞의 논문, 409頁.

75) 중국스포츠협회의 특징은 행정기관책임제도를 채택하여 기타국가 스포츠협회의 집단지도관리책임제와는 상이하며 등기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대표대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또한 협회구성원이 대부분 직업활동을 하고 있어 기타국가의 비전문활동과도 구별이 된다. 王玉梅, “論我國的體育行業協會”, 『스포츠와 법』 제7권, 2005.10, 291면.

76) 林世行, 앞의 논문, 409頁.

77) 중재합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사자 간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중재합의라고 한다. 강수미, “중재합의의 성립 내지 효력에 관한 준거법”,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2006년, 92면.

78)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이다. 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효력범위에 대해서는 국내외적 거래관계는 다수 당사자가 복수의 계약을 통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관여하는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구속되는 당사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중재합의의 취지를 간과하게 되거나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중재합의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속인, 합병법인 등과 같이 권리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포괄승계에 관하여 반대의 합의가 없거나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김용길, “중재합의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다76573 판결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2013.6, 11면, 21-22면 참조; 중재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법인에게 서로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Arnold v. Arnold Corp.*, 920 F.2d 1269, 1281-82(6th Cir. 1990). non-signatory defendant, as agent of signatory defendant, may compel arbitration; allowing plaintiffs to avoid arbitration by naming non-signatory “officers, directors and agents” would nullify the rule requiring arbitration.

교부할 수 있어서 스포츠중재의 강제력이 이런 분쟁에 반드시 관련되지는 않는다. 반면 스포츠경기참가자 간에 발생하는 처벌, 자격, 흥분제 복용 등의 분쟁은 스포츠중재에 교부하여야만 한다. 당연히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우선적으로는 스포츠업계의 내부구제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스포츠중재합의는 내용상 최소한 세 가지를 포함해야만 한다. 스포츠중재의 의사표시 청구, 스포츠중재사항, 선택한 스포츠중재기구가 그것이다. 구체적 형식은 중재조항, 중재합의서 및 기타형식의 협의가 있다. 중재조항은 당사자의 자격등록, 중재기구 참가 혹은 시험 때 체결한 계약을 포함하며, 또한 중재기구 약관과 규칙 내의 중재조항을 포함한다. 기타형식은 주로 쌍방이 주고받은 서신과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진 중재의사를 말한다.<sup>79)</sup>

#### (5) 스포츠중재절차의 다원화

스포츠시험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짧으며 매우 강력한 시간적 요구가 존재한다. 운동선수의 현역시기가 짧은 것은 운동선수의 시험참가자격이나 기타권리상의 분쟁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통해 선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스포츠분쟁의 발생과 해결의 필요에서 보면 스포츠중재절차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스포츠중재 보통절차이다. 기타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모두 보통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중재 간이절차가 있다. 분쟁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며 분쟁이 크지 않는 경우 간이절차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스포츠중재 특별절차가 있다. 이것은 주로 스포츠시험이 장차 진행될 때 및 진행 중 발생하는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때 적용하는 절차이다.<sup>80)</sup> 일부국가의 경우 스포츠기관 외에 전문적인 스포츠중재기관을 두어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스포츠중재와 관련한 입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스포츠그룹의 내부해결이 스포츠중재의 前置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중재 사법감독의 모델과 관련해서 중국은 국내중재와 대외중재, 사법감독을 각기 대응하고 있다. 국내중재에 대해서 중국인민법원은 감독권을 갖는다. 법원이 재결 중의 사법심사권을 집행 및 취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법률은 당사자 협의배제권리가 없기 때문에 강행규정에 속한다. 대외중재에 대해서 법원은 공공정책에 위반한 것을 제외하고 중재에 간여하면 아니 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중재의 사법감독은 국내중재에서 법원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고 대외중재에서는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두 개의 상이한 감독모델이 동일한 법률에서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면감독론과 절차감독론이라는 두 개의 학설에서 陳安교수는 차별없는 통일된 감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

79) 林世行, 앞의 논문, 410頁。

80) 林世行, 위의 논문, 410頁。

장하였으며<sup>81)</sup>, 肖永平교수는 이에 반박하여 국내중재와 대외중재를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외중재법원에 대해서는 절차만 감독할 수 있고 중재내용을 감독할 수 없는 것은 설령 국내중재와 대외중재 양자를 병용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sup>82)</sup> 그렇다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모델의 중국에의 적용여부<sup>83)</sup>가 관건이 되는데 원칙상 중재의 내용을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중국 내 스포츠중재와 국제스포츠중재의 감독범위를 통일할 수 있고 보통중재 중의 이원화 시스템을 피할 수 있다. 법원원칙상 단지 절차만 감독한다면 중재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절차감독에만 치우친다면 스포츠중재 개별안건에서의 공정성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중재당사자 쌍방이 협의를 통해 법원의 감독범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VI. 결론

구체적인 분쟁유형과 관련하여 스포츠게임의 전형적인 분쟁은 스포츠중재기관이 관할하도록 하고, 기타중재기관의 중재범위에 부합하지만 스포츠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러한 분쟁은 스포츠중재기관이 관할하거나 기타중재기관 혹은 사법부문이 관할하도록 송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분쟁을 스포츠중재기관에 송부하여 공정원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기타 중재기관이나 사법부문이 관할하도록 하며, 스포츠활동 중 형법에 관련된 분쟁은 사법부가 관할하도록 송부해야 한다. 스포츠중재와 형사소송제도의 관계를 보면 심판매수죄는 중국형법에서 수뢰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법적 성질을 감안하면 수뢰죄를 구성해야만 한다. 즉 형법 수정이나 사법해석으로 이것을 수뢰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단체나 프로팀의 처벌불복으로 일어난 분쟁에 행정쟁의의 협의가 있는 경우 行政復議제도로 해결해야 하고 협회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또한 동종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된다. 그 이유는 사법부가 축구협회와 같은 공공기관에 간여를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목적물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거나 혹은 스포츠중재기관에 넘겨 처리하거나 일반 중재기관에 넘겨 처리하여야 한다.

스포츠분쟁 안건수리범위와 관련하여 독일법원은 스포츠분쟁 심리 시 단순히 관련 법률 절차의 합법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고 스포츠협회가 지목한 사실에 대한 재결은 독일

81) 鄭 璐·張 冲, “我國體育仲裁司法監督模式選擇”, 『價值工程』, 2012(02), 291頁.

82) 肖永平, “也談我國法院對仲裁的監督範圍”, 『法學評論』, 1998, 87(1), 42-47頁.

83) 鄭 璐·張 冲, 앞의 논문, 291頁.

법원이 통상적으로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스포츠협회가 채택한 합리적인 규범과 약관이 공공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경우 미국법원은 일반적으로 간여하지 않는다. 서방의 입법례와 관련하여 IOC 스포츠중재의 안전수리범위가 있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절차에서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다원화된 중재절차규정을 입법과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일반규정과 보통절차, 특별절차를 입법으로 규정하고 자문절차는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일중재절차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다원화된 중재절차를 비교하면 안전수리범위에서 스포츠중재 일반절차는 내부분쟁해결시스템이 없는 일반 스포츠분쟁을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법률개정 시 내부구제 시스템을 스포츠중재의 前置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간이절차는 특별절차보다 짧아야 하고 특별절차는 보통절차보다 짧아야 한다. 특별절차에서는 입증책임원칙을 채택하여야만 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중재에서 조정절차를 일반절차와 간이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강행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남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영국 스포츠분쟁해결센터 고유의 사례를 통하여 상소중재절차와 일반중재절차를 고찰해보았다. 상술한 사례는 중국에 일정한 시사가 될 것이다.

스포츠중재 적용범위의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스포츠중재 적용범위에 반드시 스포츠중재기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분쟁과 스포츠중재기관이 해결가능한 스포츠분쟁이 두 가지가 법률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 유동, 전직 등의 신분분쟁 및 시합참가자격분쟁도 스포츠중재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처벌규율 및 스포츠계약 관련분쟁 또한 스포츠중재 적용범위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북경 외의 여러 도시에 스포츠중재기관을 설립하여 스포츠중재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수미, “중재합의의 성립 내지 효력에 관한 준거법”,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2006.
-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 김용길, “중재합의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다76573 판결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2013.
- 하현수, “중국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3권 4호, 2013.
- Yeun, Kee-You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Bodies and

- Challenges of Legislative Policy for Reestablishment of Sports Arbitration Agency in Korea”, 『중재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3. 9.
- 張笑世著·오일환譯, “중국에 있어서 스포츠선수임용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2006.
- 張笑世, “중국 프로리그의 법률문제 연구”, 『스포츠와 법』 제5권, 2004.
- 馬宏俊·李恒廣, “스포츠자치권을 논함”, 『스포츠와 법』 제7권, 2005.
- 王玉梅, “論我國的體育行業協會”, 『스포츠와 법』 제7권, 2005.
- 林世行, “我國體育仲裁現狀及構建體育仲裁制度建議”, 『首都體育學院學報』, 2009.
- 何正兵, “論我國體育仲裁的適用範圍”, 『成都體育學院學報』, 2008.
- 張厚福, “體育知識產權的產生與客體”, 『體育科學』, 2001.
- 鄭 璐·張 冲, “我國體育仲裁司法監督模式選擇”, 『價值工程』, 2012.
- 肖永平, “也談我國法院對仲裁的監督範圍”, 『法學評論』, 1998.
- 張春良, “論奧運會體育仲裁程序”, 『西安體育學院學報』, 2007.
- 郭樹理, “建立中國體育仲裁制度的設想”, 『法治論叢』, 2004.
- 陸 攀·孔云龍, “論我國體育仲裁程序的建構”, 『安徽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
- 劉同衆·劉佳·唐晉·李君遠, “Scope and Mode of Foreign Arbitration for Sport on Legislation and Inspiration to Our Revelation of Arbitration for Sport”, 『體育與科學』, 2011.
- 黃世席, “國際體育仲裁員普通仲裁制度淺析”, 『體育與科學』, 2005.
- 黃世席, “國際體育爭議解決機制研究”, 武漢大學出版社, 2007.
- 朱文英, “體育仲裁受案範圍研究”, 『天津體育學院學報』, 2007.
- 肖永平·周青山, “英國體育仲裁制度及其對我國的啓示”, 『貴州警察職業學院學報』, 2010.
- Arnold v. Arnold Corp., 920 F.2d 1269, 1281-82, 1990.
- Ian S. Blackshaw, *Mediating Sports Disput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Hague, T.M.C. Asser Press, 2002.
- Marcia B. Nelson. “Stuck between interlocking rings: Efforts to resolve the conflicting demands placed on olympic national governing bodies”. *Van J Int'l L*, 1993.
- Simon Gardiner and others, *Sports Law*, London, Cavendish Pub., 3rd ed., 2005.
- Simon Gardiner. *Sports Law(2nd edition)*, London: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1.



## 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Sports Arbitration and  
Suggestions on the Construction of a Sports Arbitration System in China  
- A Comparative Analysis of England Legal System -

Jong-Woo Kim

To confirm the division of the scope of sports arbitration, the English sports arbitration system will be analyzed as well as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court. If these forms of sport arbitration are combined with the existing China legal system and sports systems, they will effectively deal with the procedures of sports arbitration and of their linked programs, and clarify the nature of sports arbitration.

With regard to the judicial supervision mode, domestic scholars have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comprehensive supervision theory" and "program supervision theory". Based on analyzing the above theories,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opposition between the two is not absolute, as both can reach agreement on the important issue of whether to conduct substantive court examination or not under the premise of party autonomy.

**Key Words** : Sport Arbitration in China, The Scope of Accept Items, China Sport Arbitration Proceedings, Sports Arbitration in England, Legal System